

인문교육연구실 운영세칙

人文教育

근거 · 규정 제31조 제1항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경기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규정 제5조 제1항 제8호 및 제23조 제8호에 따라 설치되는 인문교육연구실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의 취지)

인문교육연구실은 동양철학을 교육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평생교육·인성교육 분야의 교육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3조(연구분야)

인문교육연구실의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규정 제23조 제8호).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평생교육, 리더십, 인간관계 및 자기이해 프로그램 연구

제4조(직무)

인문교육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동양철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 시민인문학 및 평생교육 과정의 설계에 관한 연구
- 동양적 인간이해에 기반한 리더십·인간관계 교육에 관한 연구
-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내용의 수준별 구성에 관한 연구
-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른 교수법과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
- 교육효과의 측정과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소 교육사업의 교육과정 편성 자문

제5조(공통 직무)

제4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직무는 모든 연구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 해당 분야의 연구계획 수립과 연구과제의 발굴·수행 및 성과 관리
-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공동연구의 조직
- 춘계·추계 학술대회, 세미나, 콜로키움에서의 연구발표
- 학술총서·연구보고서·연구자료의 집필과 편집 참여
- 해당 분야 고전문헌 및 연구자료의 수집·정리·번역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력
- 연구소 교육사업 중 해당 분야 교육과정의 내용 자문과 강의 지원
- 연구실 간 경계에 걸치는 주제의 공동연구 협의
-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실적의 보고
-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연구·사업

제6조(구성)

- 연구실은 연구실장 1명과 약간 명의 연구원으로 구성한다(규정 제22조).
- 연구실장은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규정 제8조 제8항).
- 연구원의 위촉은 규정 제8조 제10항에 따르며, 연구원은 둘 이상의 연구실에 소속될 수 있다.

제7조(연구실장의 직무)

연구실장은 소장과 부소장을 보좌하고 이 연구실의 연구 및 사업을 관장하며, 규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소속 국)

이 연구실은 소속 국의 조정을 받는다. 소속 국은 규정 제12조의2 제5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과 실적보고)

- ① 연구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소장에게 제출한다.
- ② 연구실은 매년 연구실적을 소장에게 보고한다(규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0조(예산)

연구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편성하며, 집행은 규정 제27조에 따른다.

제11조(다른 연구실과의 협력)

경계에 걸치는 주제는 관련 연구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속 국이 조정하며, 둘 이상의 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부소장이 조정한다.

부칙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세칙은 경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규정에 딸린 문서이며,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개정한다.